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78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김용태 · 조정훈 · 김성원
서천호 · 정성국 · 배준영
조은희 · 김승수 · 김민전
강명구 · 김형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적 피해 요인임을 입증한다 해도, 손해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고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려는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불확실한 기후위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절대적 약자인 농어업인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임.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년 대비 일정량 이상의 일조량 감소라는 기상 관측 데이터에 의해 농어업재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에 기상청의 기상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와 농어업 목적물의 피해(품질 저하 포함)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하도록 명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및 제25조의2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가 발표된 구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도 이를 재해보험 보상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은 품목별·재해별·시기별로 조사하되, 기상현상 또는 병해충 발병 등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고려하여 영상분석과 광학기기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 관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 ⑧ (생략)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신설>

4. · 5. (생략)

② · ③ (생략)

조사하되, 기상현상 또는 병해충 발병 등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고려하여 영상분석과 광학기기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 관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재해보험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

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